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48
------	------

발의일자 : 2023. 5. 31.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자치역량 도모를 위한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보건지소 등의 운영 원칙 및 업무 (안 제3조 ~ 제5조)
- 주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안 제8조)
- 위원의 해촉 (안 제9조)
- 수당 및 표창(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3조

2)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6. 1. ~ 2023.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구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지소 등”이라 함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와 보건분소를 말한다.

제3조(원칙) 보건지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등별 통합체계 확립으로 주민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3.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4.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
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제4조(보건지소 등의 업무) ① 보건지소 등은 보건소별 통합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

방·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등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 환경 조성

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교육 제공

3.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② 보건지소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관할구역 외 관내 전 동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건지소 등의 운영) ① 보건지소 등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주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 등별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료비 및 소요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건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일반 주민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보건지소장 또는 보건분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거주민 및 대표
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대학교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 의회 의원 2명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주민건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항
2. 보건지소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주민건강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할 때
2. 사망·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1조(표창)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보건지소 등의 주민건강증신사업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건강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운영 지원 기준

대 상	방 법	내 용
주민 건강 프로그램 참가자(이용자)	참가자	50,000원 이내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1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 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